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86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김상욱・박준태・김기현

최형두 · 강대식 · 배준영

성일종 • 조지연 • 박성민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 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 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3(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수입자동차정 비업자는 수입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수입자동 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수입차협의회"라 한다)를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회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수입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수입차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 2. 수입차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 ③ 수입차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④ 수입차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수입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수입차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 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차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⑧ 수입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 과 수입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차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u>5</u> 명
- 2. 수입차정비업계를 대표하는위원 5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 ③ 수입차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④ 수입차협의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수입차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 여야 한다.
- ⑥ 수입차협의회는 매년 9월 3 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 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

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차협의 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 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8 수입차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 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 회사등과 수입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차협의 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연 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